

보도시점 (온라인) 2026. 9. 23.(수) 10:00
(지 면) 2026. 9. 23.(수) 석간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안전권 보장 체계 구체화
-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 독립적 사고 조사위원회 등 세부사항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 독립적 사고조사 대상 등을 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9월 23일(수)부터 11월 2일(월)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생명안전기본법」(2026.6.2 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사고 및 피해자 범위 구체화

안전사고의 범위를 사람의 사망·실종을 초래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사망·실종을 초래하거나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까지 넓게 규정했다.

피해자의 범위에는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신체적·정신적 손상(부상, 장애 포함)을 입은 사람과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유가족까지 포함된다. 다만, 고의·중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한다.

추가로 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구조·수습·지원 활동으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피해자로 정하는 사람도 피해자로 명시했다.

>>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과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절차 규정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가 주요 안전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또한, 안전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 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를 명시하고, 종합계획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 부처의 예산 반영 조치, 지자체의 조례 제정 의무 등도 함께 담았다.

>>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항목·시기 등 마련

중앙 및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계획 및 사업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체적 평가대상, 항목, 시기 등을 구체화하였다.

안전영향 분석·평가가 재해영향평가 등 기존 영향평가제도와 중복되어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하거나 정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 관련 사전협이나 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하였다.

>> 독립적 사고조사 대상 및 조사위원회 운영방법 등 명시

대형 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신설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정하고, 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구체화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기업 등에 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였으며, 국가 안전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한 예외 규정도 함께 명시하였다.

시행령안은 9월 23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mois.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취지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2026.12.3.)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윤동진 (044-205-4110)
		담당자	사무관	최희훈 (044-205-4120)
담당 부서 (안전영향평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치선 (044-205-4510)
		담당자	사무관	송정호 (044-205-4505)
담당 부서 (독립조사기구)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종성 (044-205-6210)
		담당자	사무관	박정운 (044-205-6211)



참고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조문 구성

□ 본문: 4장, 48개 조문 / 부칙: 5개 조문

구분(장)	조문 구성
제1장 총칙 * 5개 조문	• §1. 목적, §2. 안전사고의 범위, §3. 피해자의 범위, §4. 피해자의 권리 교육·훈련 대상, §5. 기업등의 범위
제2장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 7개 조문	• §6.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 §7. 위원장의 직무 등, §8. 분과위원회, §9. 사무기구 및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10.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11.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변경 절차, §12.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장 안전관련기준의 설정 등 * 16개 조문	• §13~§15. 안전관련기준의 분야·범위, 등록, 평가 등, §16. 안전기준심의회 • §17. 안전지수의 공표·안전수단 진단 및 취약성 분석, §18. 권한의 위임 • §19~§22. 안전영향평가의 대상·항목·시기·절차 등, §23~§24.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영향평가 절차, §25. 전문기관의 자문, §26~§28. 안전영향평가 교육, 지침의 통보, 결과의 보고
제4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 등 * 20개 조문	• §29.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절차 등, §30.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제공의 예외 • §31~§45. 독립적 사고조사 대상 안전사고의 범위, 조치 계획 제출 및 점검,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회의·의결, 분과위원회, 국가안전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 예비조사, 지원조직, 관계 기관 협조 및 지원, 관계인 등 의견청취, 조사 보고서의 작성, 조사결과 발표, 정보의 공개 제한 • §46. 추모사업의 추진 등, §47. 공동체 회복 사업 • §4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부칙 * 5개 조문	• §1. 시행일, §2.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3~§4. 국민 생명안전위원회의 사무기관, 사무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5. 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